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자재 산업 선진화 품을터

지난 해 우리나라 농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 겨울철은 기록적인 한파로 남부지역 녹차, 무화과 등이 사상처음으로 동해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봄철에는 저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뜯자리 등 농작물 파종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100년만의 최대 강수량을 보였으며, 8월 중부지역은 연속 13일간, 남부지역은 연속 10일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경과되었다. 이러한 최악의 이상기상¹⁾이 11회나 발생하였으나 농산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달성한 것은 8월 하순부터

정상기상을 회복한 측면도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농약을 개발·보급하고 토양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는 등 우수한 농자재 산업이 뒷받침된 덕분으로 생각한다.

농업발전은 후방산업인 농자재 산업발전과 비례한다고 한다.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농업 선진국으로



장대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농자재 등록업무
전산화 작업을 추진,
제출서류를 '종이문서에서
**전자화로!'라는 기차를 내걸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로 발전한 것은 바로 농자재 산업 발전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본다. 국내 농자재 산업발전이 필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새해 달라지는 국내 농약 관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달라지는 농약관리제도

농약관리법의 개정('12.1.26 시행)에 따라 종전의 '생물농약'이라는 용어 대신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를 신설하고 천연식물 보호제의 등록 신청시 시험성적 서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종전 '가정원예용 농약'이라는 용어

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농진청 고시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은 폐지된다.

또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금년부터는 농협중앙회·한국작물 보호협회·작물보호제판매협회 등 농촌진흥청에서

1) 이상기상 : 25년에 1회 나타나는 순별 특이한 기상(WMO : 세계기상기구), '09: 3회, '10: 5회 발생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판매관리 인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조업이나 원제업, 수입업·판매업 등 영업의 등록 신고사항 중 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영업 등록과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등록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농약을 폐기하는 등 일정 조치를 취한 후 등록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에 관한 규정도 법령으로 신설하였는데, 종전의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과 ‘농약안전성 시험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험연구기관’으로 통일함으로써 시험연구기관 명칭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기존 법령에 없었던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위로 성적을 발급하거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약 등의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약을 판매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를 계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변경된 고시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법령정보>)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농약관리 중점 추진방향

지난해 농자재 관리 제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법령

과 규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등록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낮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자재 등록신청 제출서류를 ‘종이문서에서 전자화로!’라는 가치를 내걸고 등록업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등록서류의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용량을 늘리는 등 차세대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약등록 신청서류 검토결과 부적합사유가 고시의 별표 1~8까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검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등록 기준의 투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초에 시험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 및 개정 시험연구기관 관리 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시험연구기관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임진년 새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농자재 산업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농자재 관리방안과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농자재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하여 더 밝은 농자재 미래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